#### 23 석면방직 작업자에서 발생한 위암

## 1 개요

근로자 ○○○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사업장을 비롯한 4개의 사업장을 옮겨가며 석면방직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2년 9월 건강검진상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위암을 진단받고 2012년 10월 위전절제술, 림프절 곽청술 시행 후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받았다.

# 2 작업환경

○○○은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약 2년간 방적과에서 백석면과 화학섬유를 섞어서 실을 빼는 석면방적 작업을 하였고, 1985년부터는 1986년까지 작업자로서 석면방 직작업을 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3년까지 공장장으로서 석면방직에 관한 모든 공정관리하고 보조 작업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작업은 2교대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하였고 작업 중 공장 내부에서 분진이 많이 날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끝나면 코에 분진이 하얗게 앉았다고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소화기계질환, 기타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_석면)

### 5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적출된 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중등도로 분화된 관상선종(adenocarcinoma, tubular moderately differentiated)으로 확인 되었으며, 35개의 부위림프절 중 3개에서 전이가 발견되었다. 수술 전 시행한 CLO test에서는 양성 결과를 보였다. 근로자 면담에서 고혈압의 과거력 및 가족력 (모)이 있으며 암 발생 전 병력으로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3년 11월에 촬영한 흉부 CT에서 흉막반을 동반한 석면폐증 소견을 보였으며, 2014년 4월 9일 진폐심사회의에서 0/0(석면폐), FO 판정을 받았다. 본인의 진술에 따 르면 담배는 44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연하였고, 20세부터 43세까지 1일 한 갑 정 도를 약 23년간 피웠다고 하였다(23갑년). 음주력은 위암 수술 전 까지 주당 4-5회.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83년 석면방직회사에 입사한 이후 10년간 석면방직공장에서 석 면방적업무 작업자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석면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10년간 석면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지만 H. pylori 양성이며, 흡연력, 음주력이 상당하여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